

교훈 : 성실 	<h1>가 정 통 신 문</h1>	제 2023 - 38 호
	<h2>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예방에 관한 안내</h2>	담당 : 교육과정부 경기도 시흥시 장현순환로 100 ☎ (교무실) 031-365-8200 ☎ (행정실) 031-365-8207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항상 본교 교육활동에 애정과 관심으로 지원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학부모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본교는 학교 내의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여건 조성 및 공교육 정상화를 실현하고자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교육활동 근절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학부모님 및 학생들의 이해와 협조 부탁드립니다.

□ 추진사항

가. 선행학습이 필요 없는 학교 교육과정 운영

: 학교가 편성한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 내에서 학교수업 및 방과후학교 실시

나. 학생평가는 배운 내용에서 출제

: 학생평가(지필평가, 수행평가 등) 및 각종 교내대회 등은 배운 내용에서 출제

다. 사교육 없이 준비할 수 있는 공정한 입학전형

: 특성화고, 특목고, 자사고 등의 입학전형은 입학 이전 교육과정의 범위 안에서 시행

라. 학교교육과정 편성과 운영과의 일치, 선행출제 여부 등 학교 자체 주기적 점검 실시

□ 기대효과

가.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의 일치 및 선행출제 사전 예방을 통한 학교교육의 정상화

나. 학생의 발달 단계에 맞는 교육 도모

2023. 3. 30.

시 흥 가 온 중 학 교 장 (직인 생략)

미래를 여는 행복한 교육 만들기 선행교육 예방 정책 안내

중학교 학부모 연수 자료



I 선행교육 예방 정책이란?

선행교육 예방 정책의 의미

교육권리기관의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행위를
규제하는 정부 정책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선행교육 예방 정책의 목적

「교육기본법」에서 정한 교육 목적을 달성하고
학생의 건강한 심신 발달을 도모

학교 내의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여건 조성 및 공교육정상화 실현



선행교육 예방 정책의 법적 근거

공교육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약칭: 공교육정상화법)



공교육정상화법의 연혁

- ✓ [시행 2014. 9. 12.] [법률 제12395호, 2014. 3. 11., 제정]
- ✓ [시행 2019. 3. 26.] [법률 제16300호, 2019. 3. 26., 일부개정]

II 선형교육 예방 정책의 규제 대상

“ 선형교육 예방 정책에서는 선형교육 및 선형학습 유발행위 등을 규제합니다. ”



시행 단위	규제 대상		규제 범위	
초·중·고등학교	선형교육 (교육과정 편성·운영)	재학생	앞서서 편성 국가 교육과정 및 시·도교육과정을 앞서는 학교교육과정을 편성하는 경우	
		앞서서 제공	편성된 학교교육과정을 앞서는 학교교육과정을 운영(제공)하는 경우	
		입학 예정 학생	입학 예정 학생을 대상으로 입학 후 학교교육과정을 미리 운영하는 경우	
	선형교육 유발행위 (평가)	재학생	교과 평가 (지필·수행 평가)	학교교육과정에 따라 편성한 교과별 (학년별) 진도계획을 앞서서 평가하는 경우
		각종 교내대회	배운 범위와 수준을 앞서는 내용을 출제하여 평가하는 경우	
		입학 예정 학생	입학 예정 학생을 대상으로 상급학교 (입학 예정 학교)의 학교교육과정 내용을 출제하여 평가하는 경우	
대학교	대학별고사	응시 학생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하여 평가하는 경우	

III 선형교육 예방 정책의 주요 내용



선형학습이 필요 없는 학교 수업 실시

- 학교가 편성해서 공시한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 내에서 학교수업 및 방과후학교 실시
- * 입학예정학생 대상 예비수업은 이전 학교급의 교육과정 범위와 수준에서 실시



학교 시험은 배운 내용에서만 출제

- 학교 시험(지필평가, 수행평가 등) 및 각종 교내대회 등은 배운 내용에서만 출제
- * 입학 예정학생 대상 빈편성고사 평가는 이전 학교급의 교육과정 범위와 수준에서 실시



사교육 없이 준비할 수 있는 공정한 입학전형 마련

- 특목고, 자사고 등의 입학전형은 입학 이전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 내에서 실시
- 학교의 입학전형에 대한 선형학습 영향평가 실시



선형학습을 유발하지 않도록 지도·감독 철지

-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에 교육과정정상화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교육과정운영, 선형교육방지대책, 선형학습 영향평가 등 심사·의결
- 공교육정상화법 위반시, 학교 및 대학에 시정 및 변경 명령하고, 미이행시, 학생정원·학급·학과의 감축·폐지 등의 행·재정적 조치

IV 선행교육 예방 정책의 효과

01. 대학 입학전형(논술·적성·구술시험 등)의 선행 출제 해소

- ✓ 2016년에 비해 2017~2020년에 선행 출제·평가 금지 위반 대학의 비율과 수가 현저히 감소

02. 초·중·고교 교육과정에서 선행교육 및 평가·출제가 현격히 감소

- ✓ 외고·자사고 등 일부 중·고교 입학전형의 선행 출제·평가를 포함하여 해당 내용의 위반 건수는 2016년에 23건에서 2019년에 5건으로 감소

03. 학원 등의 선행학습 유발 행위 방지

- ✓ 학원 등의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건수는 2016년 393건, 2017년 234건, 2018년 24건, 2019년 7건으로 큰 폭으로 감소



(출처 : 국회입법조사처(2020). 「선행교육규제법, 상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유발행위 금지 등의 입법영향분석」)



V 선행교육 예방 정책, 오해와 진실

Q 학생이 스스로 공부하는 선행학습도 금지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공교육정상화법」은 학습자가 자발성을 가지고 개별적으로 공부하는 선행학습까지 금지하지 않습니다.

Q 선행교육이 금지되면 학교 내에서의 교육 활동이 위축되지 않을까요?

A

그렇지 않습니다. 학교는 이전과 마찬가지로 국가수준 교육과정 및 시·도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에 따라 교육과정을 재구성하여 가르치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공교육정상화법」은 학교에서의 선행교육을 금지하고 선행학습 유발 요인을 억제함으로써 학습 부담을 줄이고 학교 교육활동을 정상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Q 교과 간 혹은 교과 내 교육과정 재구성을 통해 교과 내 또는 교과 간의 일부 내용을 앞서서 가르치고 평가하는 경우는 선행교육에 해당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학교의 교과 교육과정 재구성을 위해 교과별(학년별) 진도 계획을 편성 또는 수정하고, 이에 근거하여 일부 내용을 앞서서 가르치고 평가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한 학기 단위를 넘어서는 재구성이 일어나는 경우에는 반드시 이를 정보 공시에 반영하여 계획과 운영의 불일치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Q 선행교육 예방을 위하여 학교와 교육청에서는 어떠한 노력을 하나요?

A

학교에서는 학부모와 학생들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연수를 실시하며, 교육청에서는 시·도교육청 차원의 점검단 또는 컨설팅 지원단을 운영하여 선행교육 예방을 위한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